□ 참고 및 유의사항

◈ 공통사항

○ 대지지분 및 지료청구권(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)을 일괄매각함. (각 개별매각 불가)

○ 매각물건의 현황파악등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현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,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,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.

○ 공매공고일 현재의 매각물건 현황(권리제한사항, 유치권 등)과 그 이후의 매각물건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매수인은 응찰에 앞서 다시 한 번 각 매각물건의 공부(公簿)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매각물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찰하시기 바람 .

○ 제세공과금등은 과세기준일이 매수인의 잔금약정일·잔금완납일·이전등기일·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, 그 이후인 경우에는 “매수인”이 부담함.

◈ 기타 유의사항

[지료청구권(채권)]

○ 본건 매각 대상 상가 8개호 지료청구권(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)의 구체적 금액은 미확정 상태로서, 매수

인이 각 건물(세대) 소유자와의 계약 또는 판결 등을 통하여 청구대상 및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야 함.

○ 매수인은 지료청구권(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)의 불성립, 무효 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계약해제,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.

○ 매수인이 지료청구권(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)을 행사하기 위하여 매도인과의 채권양도계약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매수인은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채권양도통지권한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날인 요청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협력함"